

업라이즈투자자문「투자일임계약서(중도입출금불가형)」 개정안 신.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<b>제19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)</b>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(현행과 동일)</p> <p>1. (현행과 동일)</p> <p>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(현행과 동일)</p> <p>4. (현행과 동일)</p> <p><b>5. (신설)</b></p>	<p><b>제19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지)</b></p> <p>③ (현행과 동일)</p> <p>④ (현행과 동일)</p> <p>1. (현행과 동일)</p> <p>2. (현행과 동일)</p> <p>3. (현행과 동일)</p> <p>4. (현행과 동일)</p> <p><b>5. 고객이 투자일임계약 체결 이후 &lt;별지&gt; 세부계약조건의 투자일임대상계좌에 1개월 이상 최소운용금액 이상의 투자일임재산이 입금하지 않아 투자일임운용이 불가능한 경우</b></p>	<p>계약의 변경 및 해지 사항 추가</p>
<p>부칙</p> <p>이 약관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</p> <p>이 약관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약관의 개정</p>